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194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)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(변경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4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위치	⑥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주요 통과지	⑩총연장 (km)
변경 (추가)	고속 국도	제10호	남해선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	45,301.0㎡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	

2. 도시계획시설(시설:광장, 녹지) 결정(변경) 내용

○ 순천시 도시계획시설(광장)결정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규 모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1	광장	교통광장	서면 압곡리 531번지 일원	191,399.0	증)46,106.0	237,505.0	전남고-258호 (1993.09.21)	남해 고속도로 순천IC

○ 순천시 도시계획시설(녹지)결정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규 모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4	녹지	완충녹지	고속도로변 대로1-18호선변	143,854	감)9,513	134,341	전남고-217호 (2001.11.30)	

3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:

-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
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:

- 2022년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비 고
						성명	주소	
1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	1063-15	도	1,154.0	41.0	국	국토교통부	
2		706-7	도	687.0	202.0	국	국토교통부	
3		706-1	도	3,104.0	3,104.0	한국도로공사	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	
4		700-7	도	9,876.0	74.0	국	국토교통부	
5		700-3	도	3,408.0	3,054.0	국	국토교통부	
6		702-3	구	10.0	10.0	국	국토교통부	
7		709-3	도	182.0	182.0	국	국토교통부	
8		1063-7	도	1,794.0	1,369.0	국	국토교통부	
9		709-2	답	69.0	69.0	국	국토교통부	
10		714-2	도	7.0	7.0	강창길	순천시 동외동 203	
11		713-2	도	787.0	787.0	국	국토교통부	
12		706-8	도	1,200.0	1,200.0	국	국토교통부	
13		706-2	도	12,331.0	12,331.0	국	국토교통부	
14		706-4	도	3,312.0	3,312.0	국	국토교통부	
15		706-3	도	843.0	843.0	한국도로공사	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	
16		1060-7	구	1,230.0	869.0	국	국토교통부	
17		733-5	도	33.0	33.0	국	국토교통부	
18		752	도	17,814.0	17,814.0	국	국토교통부	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열람장소

- 순천시청 도시과

(주소 :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, 전화번호 : 061-749-6315)

- 한국도로공사 도로처

(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, 전화번호 : 054-811-2526)

-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

(주소 :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26, 전화번호 : 061-883-6441)

나. 열람기간 : 사업기간 내 (2022년)

7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1	남해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0호선)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	도로구역(변경)결정 도시계획시설(변경)결정	

8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

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.
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